

2016년도 제1차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의 201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 1-1. 사업목적
 - 1-2. 지원대상분야
 -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3-1. 사업비 지원기준
 -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4-1. 지원분야
 - 4-2. 신청자격
 -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
 - 5-1. 평가절차
 -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해외와의 에너지기술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선진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에너지기술경쟁력 제고와 에너지 신시장 창출에 기여

1-2. 지원대상분야

- 에너지자원, 신재생에너지, 전력, 원자력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과제 유형	공모방식	개 요	지원 과제수
선진기술획득 공동R&D ¹⁾	자유공모 ³⁾	- 지원규모 : 연간 7억원 내외 - 지원기간 : 3년 - 주관기관 : 국내 산·학·연 - 해외참여기관(산·학·연) 필수 * 해외참여기관은 공동펀딩 권고	3개 내외
해외시장진출 공동R&D ²⁾		- 지원규모 : 연간 7억원 내외 - 지원기간 : 3년 - 주관기관 : 국내 중소기업 - 해외참여기관(산·학·연) 필수 * 해외참여기관은 공동펀딩 권고	

1) 선진기술획득공동R&D : 기술선진국과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기업이 필요한 선진기술 획득

2) 해외시장진출공동R&D : 국내 우수기술의 개도국 등 해외시장진출 촉진

3) 자유공모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

- 과제 유형에 따라, 지원분야 및 참여요건에 부합하는 연구주제를 사업 수행기관 및 수행자가 자유롭게 제안하여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과제 및 과제 수행자를 선정하는 방식임
- * 단,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는 생략하고, 사업계획서를 접수 후 평가를 진행함

2. 사업추진체계

- 단일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 주관기관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 단, 해외 참여기관 필수
 - 총괄책임자는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 ¹⁾ 유형	과제 유형	
	선진기술획득 공동R&D	해외시장진출 공동R&D
대기업 ²⁾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³⁾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1) '수행기관'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 2) '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 3)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임
- 4)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③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선진기술획득 공동R&D	해외시장진출 공동R&D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 해외참여기관은 공동펀딩을 권고함
 - * 공동펀딩이란 해외에서 부담하는 연구비(현금)임. (필요시 현물 추가)
 - * 개도국의 경우, 현금 부담이 불가능한 경우 현물 부담으로 대체 가능
 - * 해외기관 지원 정부출연금 대비 공동펀딩 비율에 따라 우대가점 차등 적용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
-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¹⁾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 3)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정액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 표와 같음

재 원	에 특	기 금		
기술분야	에너지자원	신재생에너지	전력	원자력
인건비 비중	42%	43%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연차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8월 2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중소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 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이 해당 두뇌 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기본과정)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8월 2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 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 이상 2% 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과제 유형	공모 방식	지원분야	주관 기관	연구비 (수행기간)	기술료	비고
선진기술 획득 공동R&D	자유 공모	- 효율향상(건물효율, 산업효율, 전기자동차, 히트펌프, 청정연료, 에너지신산업) - 온실가스처리 - 에너지저장 - 자원개발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바이오, 폐기물, 수력, 해양, 태양열, 지열)	국내 산학연	과제별 연간 7억원 내외 (3년)	징수	-역량관련 선행연구 실적 등이 검증될 수 있는 해외기관 참여 필요 -해외기관의 연구수행 필요성 제시 필요 -국내기관간 단독수행 대비 기술격차 해소정도 -해외기관 연구비중 20% 이상 권고 -주관기관이 학연인 경우 국내 기업 참여 필수 -해외기관과 연구관련 적극적 인력교류 필요 -기술개발 결과물의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화 방안 필요
해외시장 진출 공동R&D		- 전력(스마트그리드, 수화력발전) - 원자력(원전계통, 원전 안전)	국내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기관 역할 필요 -해외기관과 연구관련 적극적 인력교류 필요 -기술/상품계약을 위한 사업화 모델 제시 -해외기관 연구비중 20% 이상 권고 -해외 현지 사업화 방안 필요 -사업화 성과지표 제시 필요 · 수출계약, 매출액 등

4-2. 신청자격

□ 주관기관

- 해당 유형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기관. 단, 공고에 명기된 주관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을 참여기관으로 포함 필수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 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동시 수행 과제수가 접수마감일 현재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동시수행 과제수	3개	5개

- 단, 에너지인력양성사업 과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5-259호)’ 제20조제3항에 따른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보지 않음(다만,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산정에는 포함함)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 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 2016년도 공고 이후 신규 수행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받는 경우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 수로 판정. 단,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지정 공모형 과제는 “도전적 R&D 과제”로,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이력 누적 조건에서 제외함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가 필요한 과제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 기술료 징수 과제에서 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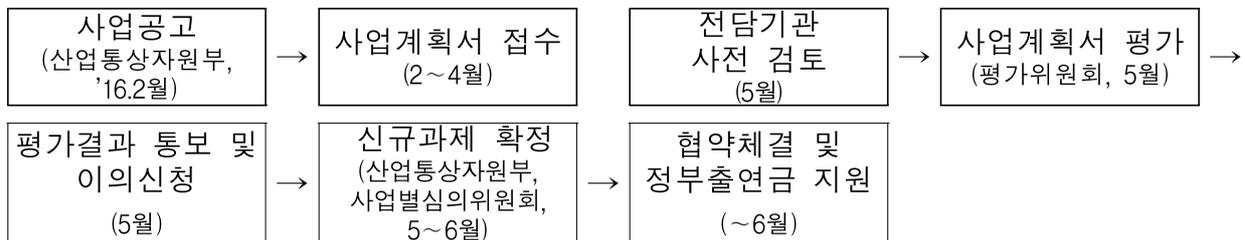
- 자유공모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사업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총괄책임자의 총 과제 참여율이 130%를 초과한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 공동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자유공모)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 평가는 발표평가(파워포인트 등 사용가능)로 진행됨
 - * 지원가능 과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 제외 될 수 있음
 -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

- 평가항목은 “기술성 및 개발 능력”,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임
 - * 단, 과제유형별 평가지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사업공고란 및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 참조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우대함. 단, 가점1과 가점2를 동일한 비율로 합한 점수를 최종 가점으로 적용함(최종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가점1) 아래의 경우에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단, 가점1의 합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종가점 합산 시에는 가점1의 합에 50%의 가중치를 곱하여 적용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5점)

②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③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3점)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②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④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점)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장관상 수상자에 한하며, 전담기관장상 수상자는 가점부여 대상이 아님

※ 가점 인정을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가점2) 해외 부담 현금비율에 따라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번호	항 목	가점						
1	○ 외국측 정부 R&D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 해외 참여기관이 민간 부담금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	5 (최대)						
	<table border="1"> <tr> <td>해외 부담 현금비율(%)</td> <td>10초과~50이하</td> <td>50초과~80이하</td> <td>80초과</td> </tr> <tr> <td>가점</td> <td>3</td> <td>4</td> <td>5</td> </tr> </table>		해외 부담 현금비율(%)	10초과~50이하	50초과~80이하	80초과	가점	3
해외 부담 현금비율(%)	10초과~50이하	50초과~80이하	80초과					
가점	3	4	5					
	* 해외 부담 현금비율 : 해외 참여기관에 지원하는 정부출연금의 총합 대비 해외에서 부담하는 현금 비율(%)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3점)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과제의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성과활용평가 결과 통보 후 3년 이내인 경우(3점)
- * 본 감점사항은 2016년 최종평가 대상 과제의 성과활용평가 결과부터 반영함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 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 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7. 신청방법,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내용
신청방법	○ 공고기간 : '16. 2.3(수) ~ '16. 5. 3(화)까지 90일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교부 : '16. 2. 22(월) ~ 5. 2(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평가원 홈페이지 (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전산등록 : '16. 2. 22(월) ~ 5. 2(월)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16. 4. 25(월) ~ 5. 3(화) 18:00까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업 계획서(전산 접수 사업계획서와 동일해야 함)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 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 전산등록시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http://genie.ketep.re.kr 회원가입 필요)
- * 전산 접수된 사업계획서로 평가하며, 이후 변경사항은 반영하지 않음
-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신청서 접수처

- 제출주소 : (0617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제협력실
-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제출 서류 사항

서류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
사업계획서	원본	1부	전산접수된 파일과 동일해야 함
해외기관별 사업계획서	원본	1부	전산접수된 파일과 동일해야 함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1부	-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각1부	-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1부	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기관(기업)별 날장 제출 가능)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각1부	-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1부	-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각1부	-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수행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 대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참여기관이 포함되어야 함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신규 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함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가능 과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는 최종목표 및 평가 방법의 “정량적 기술목표 항목”에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정량적 성과 목표항목”의 경우 사업별 성과지표 및 기술분야별 특성에 맞는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제시해야 함

- 정량적 목표항목은 사업계획서 및 계속·종료과제 평가 시에 평가지표로 활용되므로, 그 내용을 정확히 제시해야 함
- 해외기관 작성 영문사업계획서 별도 제출
 - 기존 주관기관이 국문으로 번역·요약해서 작성·제출하는 사업계획서와 별도의 양식을 사용하여 해외기관별로 영문을 사용하여 작성·제출해야 하며, 해외기관 대표 및 수행책임자의 서명 또는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선진기술획득 과제는 국내·외 컨소시엄의 연구자들이 매년 최소 1개월 이상 상대국에 체류하는 연구자간 교류프로그램을 사업계획서 내 포함하는 것을 권장함
- 해외시장진출 과제는 기술개발 성과물의 사업화를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 교류회 등 홍보를 위한 활동계획을 사업계획서 내 포함하는 것을 권장함

□ 국외기관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

- 국외기관의 사업비 산정은 해당국가 및 해당 기관의 비목별 사업비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국외기관의 정산은 해당 국가의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정산방식 적용 또는 자체정산으로 같음할 수 있음
 - 국외기관의 장은 사업비정산을 실시한 후 전담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자체정산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함
 - 이때, 주관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해당국 외부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또는 별도 양식에 따른 추가증빙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다만, 외국 소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있는 수행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외국 소재 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협약체결 전까지 「산업기술 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 기타

- 해외 참여기관과의 지적재산권, 사업계획서 협약 등과 관련하여 전담기관(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에서 관련 법률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10. 문의처 등

□ 사업설명회

- 목적 : '16년도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 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개최 일자 및 장소

일시	지역	개최 장소	시간
2월 23일(화)	서울	코엑스 327호	14:00~16:00
2월 24일(수)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컨퍼런스홀	14:00~16:00

- * 상기 개최일정은 지역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사오니, 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요망
- *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요망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 접수·평가 관련 문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제협력실 : 02-3469-8342 ~ 3
- 전산입력 및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관련 문의 : 02-3469-8813~4

기타 고객만족 콜센터

고객센터 서비스	연락처
중소·중견기업 전용서비스	1899-0786
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	1899-0784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개발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국내 에너지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견인하고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술개발 과제를 매년 발굴·지원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